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수리
신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